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46
----------	------------

제안연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 교육감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 중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구성 사항 중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 중 “저소득 가정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3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안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p> <p>② ~ ③ (생략)</p> <p>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저소득 가정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 등의 제공</p> <p>4.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p> <p>.....</p> <p>.....</p> <p>.....</p> <p>..... <u>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u></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p>제7조(사업추진) (원안과 같음)</p> <p>1. ~ 2. (원안과 같음)</p> <p><u><삭제></u></p> <p>3. (원안 제4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
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통계관리)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